# 진급 및 졸업사정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0.12.22. 개정 2022.04.04.

##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학칙시행세칙 제5장 및 제7장에 의거하여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성적평가와 진급·졸업자격의 심의를 위한 진급 및 졸업사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각 학부장 및 계열(학과)장(전공장 포함)을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0.12.22., 개정 2022.04.04.>
- ②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#### 제3조 (직무)

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학생성적 평가에 대한 사항
- ②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에 대한 심의
- ③ 졸업예정자에 대한 심의
- ④ 졸업 우수자 포상 심의

#### 제4조 (회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1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